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

발 의 자 : 이해민 · 민병덕 · 김선민
강경숙 · 서왕진 · 서영석
정춘생 · 김동아 · 손명수
김재원 · 조인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. 이에 현행 ‘친족 간 특례’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.

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.

이에 범죄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, 재판, 증거·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, 도피,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1조 등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행위자가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은 그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

제1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, 행위자가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51條(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) ① ・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第151條(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) ① ・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행위자가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은 그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</u>
第155條(證據湮滅等과 親族間の 特例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第155條(證據湮滅等과 親族間の 特例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, 행위자가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</u>